

07 | Q & A |

Q 서류발급 시본인이 왔는데 왜 신분증이 필요하나요?

A 의료법시행규칙제13조3(기록열람등의요건)에근거하여 환자에관한기록의열람이나그사본의발급을요청할경우에는 기록열람이나사본발급을요청하는자의신분증 사본 을 의료기관개설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Q 주민등록증이발급되지않는만17세미만환자의경우신분확인및구비서류는?

A 주민등록증발급이전의만17세미만미성년환자의경우는 여권,학생증,주민등록등본및가족관계증명서등을통해환자본인확인후발급가능합니다.

Q 진단서의유효기간이있나요?

A 유효기간이정해져있지는 않지만환자의상태에따라진단과소견이달라질수있으므로발급후바로사용하여야합니다.

Q 입퇴원일,수술일,수술명,진단명,진료일자등간단한기록내용을전화로물어보면가르쳐줄수있나요?

A 환자에관한모든정보는비밀정보이기때문에본인확인되지않는전화상으로는어떠한정보도알려드릴수가없습니다.이는고객의정보보호와정확한정보제공을위한조치이오니번거로우시더라도의무기록사본및진단서로증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Q 진료기록을Fax나우편및E-mail로받을수있나요?

A 해당진료과의주치의면담을원칙으로하며진료기록은 환자에관한민감한개인정보가 기재되어있어번거로우시더라도직접방문하시어발급받으셔야합니다.

Q 사망한가족의의무기록사본발급시필요한서류는?

A 환자가동의할수없는경우친족에게신청권한이있으며,사망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본원사망자는제외)와직계가족임을증명할수있는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신분증이필요합니다.친족이제3자를대리인으로선임한경우친족과대리인간의위임장및친족신분증사본을추가로제출하여야합니다.

Q 환자의친족또는대리인이사본발급을위해제3자에게재위임할수있나요?

A 위임받은당사자가직접발급받는것이원칙이지만,불가피한사유로위임받은자가제3의대리인에게재위임하는경우에는재위임할수있다는내용을기재하여반드시환자자필서명을받아신청가능합니다.

Q 여러과에서진료를보았는데사본발급신청시각과별로주치의와면담해야하나요?

A 보건복지부령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의정1107-25)에의거 '의사의의학적판단이필요한진료기록의사본발급은 해당진료과에접수,의사의결정을받은후발급하도록' 명시하고있습니다.

Q MRI·CT촬영한영상자료복사절차는?

A 영상의학과로직접방문하시어신청서작성과관련서류를제출하시면바로발급해드립니다.단,영상자료는복사시간이10분이상소요되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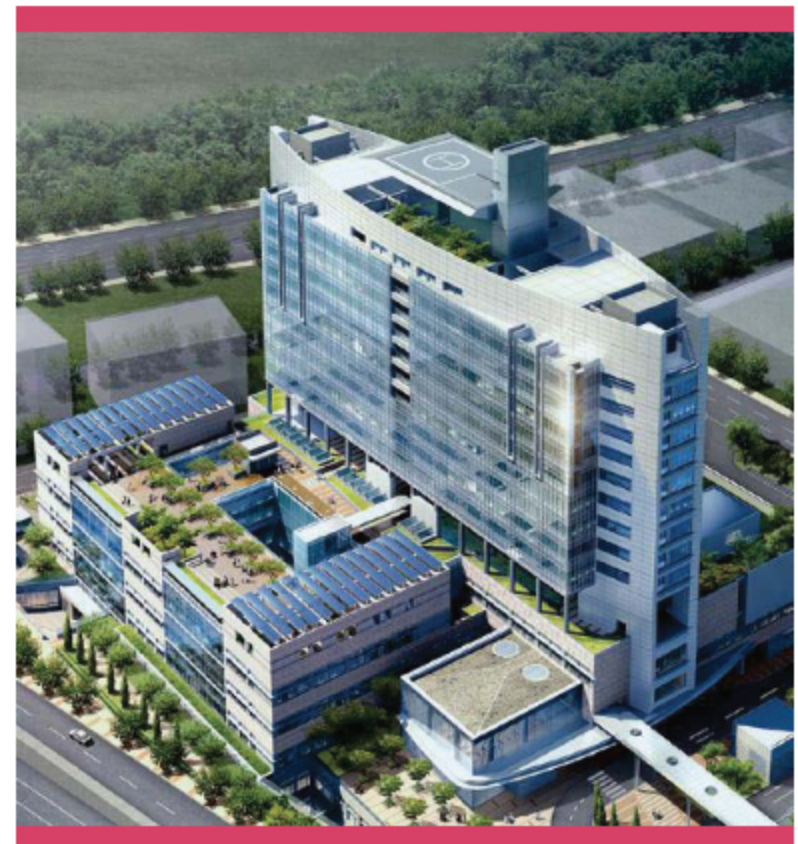
Q 병리슬라이드는어떤절차에의해발급되나요?

A 의무기록사본발행절차에따라사본발급후본관3층병리과(Tel:200)에서슬라이드를발급및대출해드립니다.

의무기록팀
환자·보호자를위한안내서

서류발급 절차안내

(의무기록 · 제증명서 · 영상자료)



01 의무기록사본 발급 절차

· 직접방문시

- 예) 외래초진기록, 수술기록 등 의료진 작성 기록

진료과접수
(해당 과담당 교수 진료시간 확인 후 내원)

수납

사본수령(신청서작성 및 구비서류제출)

※ 의료인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진료과로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 후 사본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검사결과만 신청시

- 예) 조직검사결과, 혈액검사, CT검사 결과 등

서류발급 청구 방문(신청서작성)

수납 및 사본수령(구비서류제출)

※ 산부인과 검사 결과는 진료과 확인 후 발급 가능

· 인터넷 신청시

-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본인이나 대리인으로서 의무 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http://donganhalymork)에서 발급신청

담당자와 유선 연락, 지정일 서류발급 청구 방문

구비서류제출 및 신청서작성

사본발급 수납 후 수령

02 제 증명서 발급 절차

진료과접수

담당 의사에게 필요한 서류 요청

수납

제증명서 발급

※ 재발급인 경우는 발급창구에 요청(구비서류 지참)

※ 진단서는 환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친족이 구비서류 지참하여도 발급 불가, 의료법 제17조)

03 영상자료 발급 절차

영상의학과 방문(신청서 작성)

수납 및 영상자료 수령(구비서류제출)

※ 입원 중인 경우는 퇴원 하루, 이틀 전에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 등 필요하신 서류를 담당 간호사에게 말씀하십시오.

04 서류발급에 필요한 구비 서류

(의료법 제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3)

· 환자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친족에게 신청 권한 있음)

구분	구비서류	비고
환자 사망 의사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신청자의 신분증	제3자에게 위임시 친족신분증서본, 친족 과대리인간 의위임장, 추가 구비서류 필요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사실 확인 서류, 의사불명 확인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 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만 14세 미만 미성년 자도 의사능력이 있 으면 단독 발급 가능
친족	신청자의 신분증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 하는 서류 추가 제출 후 신청 가능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복대리인 선 입을 동의한 경우에 한해 복대리인 선 청 가능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05 발급 수수료

- 사본 발급 - 매수당 1,000원(5장), 추가 1장당 100원
- 영상자료 복사 - 20,000원(4GB)
- 제증명
 - 일반진단서 20,000원
 - 병사용 진단서 20,000원(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입퇴원확인서 3,000원
 - 외래진료사실증명서 3,000원

※ 이외의 제증명서는 종류별로 수수료가 상이하오니 서류발급 청구 수수료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6 발급 시간

- 평 일 - 08:30 ~ 17:30
- 토 요 일 - 08:30 ~ 13:30
- 문 의 - 031) 8086 - 2136 ~ 2138